

총회 역사유적 지정 및 관리 규정

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한국 교회 및 총회와 관련된 역사유적, 유물, 인물 등 문화유산을 보존하기 위하여 역사유적 지정 및 관리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유적·유물·인물·문화유산에 대한 정의)

1. 유적

- 1) 유형의 문화적 소산으로 신앙상, 역사상 가치가 큰 장소 및 건축물
- 2) 산, 들, 도시, 농촌, 섬, 동굴 등 역사적 신앙운동이 발생한 장소, 사람들이 거주한 장소로서 기념물 제단 등 신앙 유물이 있는 곳
- 3) 최초의 교회가 세워진 곳, 신앙인물이 득도한 곳 또는 신앙 수련장소
- 4) 고분(무덤) 등 향토유적
- 5) 지명(고 지명과 현대 지명)
- 6) 종교의식이 거행된 의미있는 곳

2. 유물

신앙과 관련된 역사적 가치, 사료적 가치가 큰 물질적 자료

- 1) 비문, 제단, 금석문
- 2) 유물(신앙인의 필적), 사경, 고필, 주련
- 3) 판본류, 활자본류, 한글서적, 한문서적 등 종교, 신앙 관련 기록, 저술, 고문 및 전적
- 4) 제기, 향로, 성찬기, 조각품, 그릇, 제사예배 도구, 법복, 성의, 고퇴
- 5) 인물, 가족, 정당, 조합, 기관(교단 관련), 학교, 단체에 관련된 유형적 자료
- 6) 교단, 노회, 개 교회 관련 서류, 세례인 명부, 공동의회록, 노회록, 총회록 등 원자료

3. 인물 및 단체

- 1) 한국 교회에 공헌한 역사적 인물
- 2) 교단을 창립하고 발전에 큰 공을 세운 자
- 3) 역사적 인물과 현존 인물로 구분한다.
- 4) 인물과 인물, 인물과 단체, 인물과 시대적 배경으로 구분 기념한다.
- 5) 역사적 인물평가의 기준으로는 종교적, 신앙적 인물로서 다음 사항에 관련된 자
 - (1) 신앙의 정절을 지키기 위해 순교한 자
 - (2) 항일 독립 운동가(민족해방)
 - (3) 통일 운동가(민족통일)
 - (4) 사회봉사 운동가(사회봉사)
 - (5) 민주화 운동가(자유인권수호)
 - (6) 국가 사회발전에 공헌한 자(공직자)
 - (7) 민족을 위기에서 극복한 자(군인)
 - (8) 국민적 자각 계몽에 힘쓴 자(민중계몽)
 - (9) 사회경제에 큰 발전을 끼친 자(기업인)
 - (10) 시민운동으로 사회민중을 대표한 자(시민운동)
 - (11) 문화, 예술 발전에 공헌한 자(예술가)
 - (12) 지역사회 권익수호에 공헌한 자(향토 운동가)
 - (13) 교회설립에 큰 공로자
 - (14) 전도활동 및 세계선교에 기여한 자
 - (15) 교회, 민족, 지역 발전에 헌신한 자
- 6) 인물 규정 방법은 다음과 같다.
 - (1) 영역별 인물 선정 기준
 - ① 종교활동(신앙)
 - ② 정치, 사회, 문화, 의료, 교육활동, 향토발전
 - ③ 교단과 관계 깊은 외국인(국제협력선교동역자)
 - (2) 시대적 상징적 인물
 - ① 그 시대의 특징과 흐름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자
 - ② 정치, 사회, 경제, 문화 지역을 대표하는 사람
 - ③ 한 시대의 전환점에서 그 시대의 변천 발전에 이바지한 자
 - ④ 한 지역 선교와 교회발전에 이바지한 자

- ⑤ 그 시대의 사건에 주역으로 활동한 자
- ⑥ 인류, 민족, 사회, 지역의 평화와 행복에 이바지한 자
- ⑦ 외국인으로 가장 교단에 헌신한 자와 단체

제2장 지정 역사 유적·유물·인물·문화유산

제1절 지정 및 고시

제3조 (한국 교회 및 총회 유적·유물·인물의 지정)

1. 총회는 총회 역사위원회가 심의 지정한 한국 교회 역사 유적·유물·인물·문화유산을 국가 지정 문화유산, 도 지정 문화유산, 시 지정 문화유산으로 추천하며, 이것을 또한 총회 역사 유적·유물·인물·문화유산으로 지정할 수 있다.
2. 문화유산 지정 신청은 각 노회의 추천을 받아 총회에서 심의하고 그 문화유산의 가치에 따라 국가, 시, 도에 추천하며, 총회에서 인정하는 역사 유적·유물·인물·문화유산으로 지정할 수 있다.

제4조 (총회 역사 유적·유물·인물·문화유산의 지정)

총회는 총회 역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각 노회에서 추천된 유형 문화유산, 무형 문화유산, 사적지 및 기념물, 신앙생활 자료 등 중요한 것들을 지정할 수 있으며, 그 보유자를 인정할 수 있다.

제5조 (각 노회의 지정)

노회는 총회 역사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각 교회에서 추천된 문화유산을 총회에 추천하며 노회에서 중요 역사 유적·유물 및 신앙자료로 지정할 수 있다.

제6조 (각 교회의 지정)

교회는 총회 역사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각 교회에서 보유하고 있는 중요 역사 유적·유물 및 신앙자료 등을 총회와 노회에 추천할 수 있으며 교회에서 지정하여 보존할 수 있다.

제7조 (유적 및 유물의 지정)

총회는 제5조,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 문화유산을 총회의 유적 및 유물로 지정하고 그 지정 문화유산을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으로 정할 수 있다.

제8조 (지정의 고시 및 통지)

총회는 제3조, 제4조, 제5조,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 또는 인정을 할 경우에는 그 취지를 총회 회보에 고시함과 동시에 해당 지정 문화유산의 소유자 또는 보호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9조 (지정서 등의 교부 및 지정의 효력 발생시기)

1. 지정서 등의 교부

총회는 국가도시 지정 문화유산, 총화노화교회의 문화유산을 지정 결정한 후에는 그 당해 문화유산의 소유자에게 지정서를 교부해야 한다.

2. 지정의 효력 발생시기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총회 회보의 고시가 있는 날부터 그 효력을 발생한다.

제10조 (지정 또는 인정의 해제)

1. 총회는 지정 문화유산이 지정 문화유산으로서의 가치를 상실한 경우 총회 역사위원회 자문을 거쳐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2. 문화유산 보유자가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인하여 그 보유자로서 적당치 않다고 판단되면 총회 역사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그 인정을 해제할 수 있다.

제11조 (지정유적유물의 등급과 구분)

제4조 내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지정 문화유산에 대하여는 국가의 문화재법 또는 총회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등급을 부치거나 구분할 수 있다.

제12조 (가 지정)

문화유산으로서 제4조 내지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 전에 긴급한 필요가 있고 총회 역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여유가 없을 때에는 총회가 노회의 신청에 의하여 그 문화유산을 중요 문화유산으로 가 지정할 수 있다.

제2절 관리 및 보호

제13조 (관리방법의 지시)

총회는 지정 문화유산의 소유자 또는 보호자에 대하여 지정 문화유산의 관리 보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지시할 수 있다.

제14조 (소유자 등의 관리의무와 관리자)

지정 문화유산의 소유자 또는 보유자는 총회의 명령과 지시에 따라 당해 문화유산을 성실하게 관리 보호해야 한다.

제15조 (관리)

1. 관리단체에 의한 관리

지정 문화유산의 소유자가 불분명하거나 또는 그 소유자나 관리자에 의한 지정 문화유산의 관리가 곤란하거나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총회가 지방 공공단체나 기타 법인을 지정하여 당해 문화유산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2. 총회, 노회, 교회에 의한 관리

총회는 국가, 도, 시, 총회 문화유산으로 지정된 또는 가지정된 문화유산에 대하여 화재 또는 훼손 멸실 등의 예방 기타 그 보존의 안전을 위하여 특별한 조치를 하여야 할 필요를 인정한 때에는 그 소유자, 관리자 또는 관리단체의 동의를 얻어 총회, 노회, 교회 등에 의뢰하여 그 안정 보존상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그 요인이 해소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

3. 수리

지정 문화유산의 수리는 그 관리단체가 하여야 한다.

4. 기록 작성

지정 문화유산 중 중요한 것은 그 기록을 작성 보존토록 한다.

제16조 (허가사항)

1. 지정 문화유산의 소유자, 보유자, 관리자는 총회의 승인 없이 반출, 모사 또는 모조할 수 없다.
2. 지정 무형 문화유산을 녹음, 촬영하거나 악보, 대본을 제작하고자 할 때는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3. 지정 문화유산의 현상을 변경하거나 그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할 때는 허가가 있어야 한다.

제17조 (반출 등의 금지)

문화유산은 국외로 반출할 수 없으며, 해외 전시, 교류를 목적으로 할 때는 총회의 허가가 있어야 한다.

제18조 (허가취소)

총회는 제16조와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받은 자가 그 허가내용을 변경하거나 위반할 때에는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제19조 (관리 등의 위탁 또는 기술지도)

1. 지정 문화유산의 소유자 또는 관리단체는 지정 문화유산의 관리 또는 수리를 총회, 노회 또는 국가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2. 총회는 관리 또는 수리를 위탁받았을 때에 문화유산의 관리 또는 수리의 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3. 지정 문화유산의 소유자 또는 관리단체는 지정 문화유산의 관리 또는 수리에 관하여 총회장에게 기술지도를 요청할 수 있다.

제20조 (행정명령)

총회는 지정 문화유산의 관리 보호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다음의 명령을 발할 수 있다.

1. 지정 문화유산의 관리상황이 그 지정 문화유산의 보존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소유자, 보유자, 관리자 또는 관리단체에 대하여 일정한 행위를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명령

2. 관리자의 선임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그를 해임케 하거나 변경케 하는 명령

제21조 (양도제한)

지정 문화유산의 소유자가 그 지정 문화유산을 매도하고자 할 경우에는 총회 또는 국가, 사회단체에 우선적으로 매도하여야 한다.

제22조 (신고사항)

지정 문화유산의 소유자, 보유자, 관리자, 관리단체는 다음 여러 사항의 사유가 발생 할 때에는 총회의 법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사실을 총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1. 관리자를 선임 또는 변경하였거나 해임하였을 때
2. 소유자의 변동이 있었을 때
3. 지정 문화유산의 소재지, 지명, 지번 등의 변경이 있었을 때
4. 보관 장소가 변경하였을 때
5. 멸실, 도난, 훼손되었을 때
6. 반출 하거나 반입하였을 때
7. 촬영, 모사, 모조하거나 녹음 제작을 완료하였을 때
8. 현상 변경 조치를 착수하거나 완료하였을 때
9. 매도하고자 할 때
10. 보유자가 사망하였을 때

제23조 (보조금)

지정 문화재의 보존상 필요한 경우에는 그 경비를 국고 또는 도비, 시비, 총회에서 그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하며, 공사의 경우에는 지휘 감독할 수 있다.

제24조 (보조금의 반환)

보조금을 교부 목적 이외에 사용하였을 때는 보조금의 전부 또는 그 일부를 반환하도록 명할 수 있다.

제25조 (손실보상)

국가관리, 총회관리로서 손실을 입은 자에게 국가 또는 총회가 그 손실을 보상해야 한다.

제26조 (경비부담)

국가, 총회, 지방 공공단체는 지정 문화재의 소유자, 관리자 또는 관리구역 내에 있는 지정 문화유산에 대하여 그 관리 보호 수리 등에 필요한 경비를 부담 또는 보조할 수 있다.

제27조 (준용)

이상의 규정은 가지정 문화유산의 관리 및 보호에 이를 준용한다.

제3절 공 개

제28조 (공개)

총회 역사유적유물인물문화유산으로 지정된 경우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제29조 (부동산에 속하는 유적유물 지정 문화유산의 공개)

소유자, 관리자 또는 관리단체는 총회의 명에 의하여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제30조 (동산에 속하는 유적유물 지정 문화유산의 공개)

지정 문화유산은 공공의 목적을 위해서는 공개하여야 한다. 전람회, 전시회 등에 출품하고자 할 때는 총회의 허락을 얻어야 하며, 주최 기관은 노회, 총회 등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31조 (총회노회교회 중요 유적유물의 공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매년 1회 이상 그 문화유산을 공개하여 신앙교육과 선교사업의 가치를 창출하여야 한다.

제32조 (공개비용)

지정 문화유산의 출품에 소요되는 경비는 국고 또는 총회에서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33조 (급여금 및 보상금)

지정 문화유산을 출품하였을 때에는 총회는 그들에게 급여금을 지급하며, 멸실 파손 되었을 때에는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지정 문화유산의 출품과 공개는 반드시 허락을 얻어야 한다.

제34조 (관람료의 징수)

1. 지정 문화유산의 소유자, 보유자, 관리단체는 공개하는 경우 관람자로부터 관람료를 징수할 수 있다.
2. 관람료의 금액에 대해서는 총회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4절 조 사

제35조 (보고장수)

총회는 지정 문화유산의 실태 파악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그 소유자, 보유자, 관리자, 관리단체로부터 지정 문화유산의 현상 관리 수리 환경 보존상황에 대하여 보고를 받을 수 있다.

제36조 (직권에 의한 조사)

총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총회원으로 하여금 지정 문화유산의 현상, 관리, 수리, 환경 보존사항 등에 대하여 조사할 수 있는 바 먼저 관리단체에 그 취지를 통보한다.

제37조(조사요청)

지정 문화유산은 국가 또는 지방 공공단체의 소유 또는 관리의 경우는 기관장에게 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

제38조 (조사원의 신분)

조사원은 그 신분을 증명하는 증표를 휴대하고 관계자의 요구가 있을 때는 이를 제시하여야 한다.

제39조 (준용)

가지정 문화유산의 경우도 조사의 경우는 이에 준용한다.

제3장 개정 절차

제40조 (개정)

이 규정은 위원 과반수가 출석하고 출석 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현의하여 총회에서 출석회원 과반수 찬성으로 개정한다.

부 칙

이 규정은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2002년 9월 제87회 총회 제정
2018년 9월 제103회 총회 개정
2019년 9월 제104회 총회 개정
2020년 11월 제105회 총회 개정